■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2. 21.>

낚시터업 [ ] 폐업 [ ] 휴업 [ ] 영업재개 [ ] 휴업기간연장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낚시터명		
	허가(등록)번호		

신고 내용	폐업 연월일	
	휴업기간 또는 영업재개 연월일	
	사유	

허가증 또는 등록증 분실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 ] 폐업
[ ] 휴업
[ ] 영업재개
[ ] 휴업기간연장

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